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인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7803 발의연월일 : 2025. 1. 24.

발 의 자:이인선·고동진·배준영

김태호 · 최수진 · 김정재

이달희 • 김기현 • 성일종

최은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기술 혁신과 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중요한역할을 하고 있음. 「조세특례제한법」에서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출자할 경우 과세특례를 제공하여 출자 유인을 강화하고 있음.

그러나 동 제도의 일몰이 예정됨에 따라,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 원이 감소할 우려가 있음.

이에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 기반을 강화하고 기술 혁신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당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(안 제13조의2).

법률 제 호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"2025년 12월 31일"을 "2030년 12월 31일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13조의2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제13조의2(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)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-----2030년 12월 31일-----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주식 또는 출자 지분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 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다 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 관계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을 취득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. 1. • 2. (생략) 1. • 2. (현행과 같음) ② 제1항에 따른 내국법인이 2 (2) -----025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재간 030년 12월 31일-----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창업 기업, 신기술사업자,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출 자함으로써 주식 또는 출자지 분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

사임	は연.	도의	법인세	에서	공	게한
다.	0]	경우	제1항	각	호	외의
부흥	į	·서를	준용하	다.		

- 1.・2. (생 략)
- ③ ~ ⑥ (생 략)

•
1.•2. (현행과 같음)

- ③ ~ ⑥ (현행과 같음)